

# 北韓社会에 있어서 男女平等의 理念과 実際

— 共産圏研究를 위한 〈性의 社会学〉의 接近

李 溫 竹 \*

—— 目 次 ——

- I. 머리말
- II. 性別 구실과 社会變動一性의 社会学의 理論的 背景
  - 1. 性別 不平等의 뜻
  - 2. 性別 구실과 社会變動의 理論的 次元
- III. 北韓社会의 男女平等의 理念
- IV. 男女平等의 実際와 북한 사회의 特성
  - 1. 공식적·외현적 평등화
  - 2. 조직생활과 여성동원의 실상
  - 3. 가족생활과 남녀평등
- V. 맺는 말

## I. 머리말

여기서 말하는 〈性의 社会学〉은 英語의 the sociology of sex roles 즉 〈性別구실의 사회학〉의 줄인 말이다. 요즈음 〈女性学〉, 〈女性社会学〉이라 는 말들을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의 사회학이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게 된 데에는 역사적으로 그간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적 괴리의 심각성이 대포되고 있다고 보아야 겠지만, 아물든 그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性別(gender)로歸屬된 (ascribed) 社会的 地位와 그에 따라 부과된 사회적 구실에 관한 사회학이요, 여성에 관한 사회학은 곧 남성에 관한 사회학을 대포하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남성사회학이 따로 필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서울大学校 講師

歷史的으로나 比較文化的으로나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 근거가 生物学的, 혹은 遺伝的인 것이든, 文化的인 것이든 간에 사회마다 남자와 여자의 社会的 지위를 구분하고 그 구실도 상이하며, 性別 관념 또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性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한계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여건에 의하여 좌우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자는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며, 수단적인 구실을 하고 性的으로 능동적이라고 보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으로 덜 表出의이고 순종적이며, 수동적이고 保育의 성향을 띠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어느 사회에서든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란 지위로서 제도화 되어 있으며, 그것이 대다수 개인들의 심리적 正体感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sup>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성별 지위와 구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쩌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변동과 성별구실의 변화에 관한 理論的인 배경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특히 이 방면에서 상당히 意識的이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革命的이라 할만한 변화가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共產圈社会들이나 社會主義社會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그와 같은 성별 지위와 구실에서 급격한 변동을 겪어 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의 男女平等의 實像과 虛像을 검토하기 위한 社会学의 틀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공산권 연구의 主目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北韓社會의 實情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거나 직접 간접으로 우리의 社會發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主要共產圈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돋구려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들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의 대상은 주로, 그들이 理念的으로 내세우면서 호소력을 지닌 側面인 社会的 平等의 문제가 되겠다.

지금까지의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사회적 평등문제의 초점이 다시 좁혀져서 階級社會의 이념과 實際의in 階層化의 문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남녀평등의 주제는 歷史的으로 볼 때 일반적인 계급적 불평

(1) G.H. Seward and R.C. Williamson, *Sex Role in Changing Society* (New York: Random House, 1970), p.4.

등 보다도 그 정도가 더 짙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전승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급문제의 한 지엽적인 차원으로 취급되는 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조차 남녀평등의 문제는 男性中心의 편견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이러한 현상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 글에서 추구하는 이론적인 쟁점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北韓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비교적 학문적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 남녀평등의 문제로부터 접근함으로써 그 사회가 지니는 모순을 밝혀 볼 소지가 많다고 본다. 다만, 지금의 학계 사정으로 보아, 자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론적인 쟁점과 개념들을 정립하는 일을 시도해 보고 북한에 관한 한정된 자료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고자 한다.

## II. 性別구실과 社會變動—性의 社會學의 理論的 背景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性別구실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첫 단계로서 성별구실의 변화를 說明하려는 社會學的 이론의 일반적인 틀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사회의 변동, 특히 성별구실의 변화도 결국은 일반적인 사회변동의 한 類型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이론의 틀로 설명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이전 기타 어느 사회건 비교적 편견을 갖지 않고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性別구실의 변화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한가지 일반적인 결론은, 비록 그 정도가 상이하고,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일률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와 平等化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性의 平等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 불평등 하기 때문에, 평등화의 추세가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불평등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고, 왜 그러한 평등화의 추세가 일어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보는 것이 性의 사회학의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 *Ibid*, p. 19.

## 1. 性別 不平等의 뜻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에서도 여러 의미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글의 목적을 위해 제한된 개념규정을 해 보면, 「어떤 집단의 成員들이 그들의 귀속적 지위가 유관적합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때문에 사회에서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가치있는 지위나, 보상을 얻는데 제약을 받는다면, 이 집단은 불평등이라는 고통을 당한다」라는 해석이 된다.<sup>(3)</sup> 물론 이런 해석은, 일반사회계층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희소가치(자원) 또는 보상의 배분이 균등하지 못한 상태라는 객관적이지만 공허한 개념규정을 떠나서, 귀속적 지위라는 기준과 고통이라는 가치판단이 어느정도 개재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도 없이 서술적으로 불평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이란 相對的인 개념이므로 반드시 그 비교의 기준이 밝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중시하는 이유가 明示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드러나는 데에는, 여러가지 形式 (form) 과 形態 (type)가 있다고 본다. 불평등의 形式에는 外現的, 公式的인 法規範으로부터 각종 조직단위에서의 政策, 規約 등을 포함하여, 심지어는 非公式的, 암묵적인 社會的 壓力에 이르는 것들이 있다. 불평등의 形態라는 차원은 주로 사회생활의 領域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 피고용인, 소비자, 학생 등의 公共部門에서의 불평등이 있는가 하면, 私的인 영역, 즉 가족, 기업체, 클럽의 회원 같은 보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원에서는 각기 形式的, 公共的인 것으로부터 비공식적, 私的인 것에 이르는 일종의 連續線上에서의 불평등을 밝혀 볼 수 있다.<sup>(4)</sup>

이를 좀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자면, 현대사회에서 市民의 지위에 관한 한 불평등의 문제가 거의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에 있어서 여자, 인종, 특정 종교의 교인 같은 요소가 유관적합한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경우는 規典化된 법률규범이라는 특정한 공식적 形式을 통한 불평등(또는 평등)을 말하고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시민권,

(3) Alice S. Rossi, "Sex Equality: The Beginnings of Ideology," in Constantina Safilios-Rothschild, ed., *Toward a Sociology of Women* (Lexington, Mass.: Xerox, 1972), p. 344.

(4) *Ibid*, p. 345.

참정권이라는 특수한 形態의 불평등(또는 평등)을 일컫는 것이다. 한편, 불평등의 形式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교사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하는 여학생을 나무란다거나,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 직업을 선택치 않고 가정에 들어 앉도록 권유하고 회유한다고 할 경우, 성별 불평등을 조장하는〈암묵적인〉 사회적 압력이 가해지는 셈이며, 이는 비공식적인 불평등의 形式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추세로 보면, 헌법상으로는 남녀구별 없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헌법상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평등의 形態와는 관계없이 가정이나 개인 생활과 같은 私的인 생활영역에서는 갖가지의 남녀불평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평등의 형태가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다. 여학생의 예를 다시 들어 보면, 학교라는 공식적 생활영역에서 학생으로 다를 때는 남학생과 꼭 같이 성적에 의하여 입학시키고 평가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상호작용의 상황에서는〈시집이나 가지 공부는 해서 뭘해!〉하는 따위의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公的 영역에서의 평등과 私的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보기 될 것이다. 직장여성의 경우, 신규모집을 한다는 공식적 形式에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일단 입사 후에 승진이나 봉급인상 등의 기회와 같은 비교적 비공식적인 수준에서는 차별대우의 形式이 심하게 드러나는 것도 이러한 분석적 구분의 보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나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비교적 쉬운 영역은 공공부문(形態)에서의 법적 지위나 권리(形式) 같은 것이고, 가장 변화가 어려운 것은 가족과 일상적, 私的 상호작용(形態)에서의 내면적이고 잠재적인 사회규범 특히 原規(形式)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外現的(manifest)인 수준에서는 평등을 부르짖거나 행동으로 보이지만, 의식구조와 같은 잠재적 암묵적(latent)인 차원에서는 불평등과 차별을 그대로 믿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와 평등화되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관찰된다는 一般化가 無意味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法的인(形式的) 차원에서 시민(公共영역)으로서의 성별지위가 평등하게 보장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한 고용인으로서 직장에서도 그만큼 평등하며, 아내로서 집안에서도 그만큼 평등한 지는 의심스럽다. 일반적 평등화의 추세란 좀더 구체적인 차원 및 측면과 맥락 속에서 분석, 검토되어야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분석적 구분은 사회변동 일반에 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공산주의 사회의 연구에는 매우 긴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 추구하는 仮定의 하나는, 사회마다 이러한 制度化된 공식적 평등과 그렇지 않은 수준의 불평등 사이에는 얼마간의 괴리 또는 격차가 있으나,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 특히 북한에서는 더욱 심하지 않나 하는 점이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규범과 실제, 이상과 현실의 격차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미묘한 괴리현상인 것이다.

## 2. 性別 구실과 社會變動의 理論的 次元

대체로 社會學, 人類學 및 社會心理學의 理論들은 성별구실의 變化와 여성의 지위변동의 일차적인 요인을 궁극적으로는 經濟體系의 必須要件 또는 기술의 变化에 돌리는 것 같다. 그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가족사회학자 William J. Goode은 가족 안팎에서 일어나는 평등화의 추세를 설명하는데 있어 工業化를 주요인으로 간주한다. 공업경제란 移動性이 강하고 융통성 있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독립된 가족이 가장 적합한 유형이다. 그는 夫婦中心家族과 근대적인 공업체계와의 사이에 〈適合性〉(fit)을 설정하면서, 개인이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와 技能의 보편주의적 평가를 강조한다. 이처럼 기능과 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으로써 性이나 인종과 같은 귀속적 지위의 장애를 철폐하고 나아가서는 부부중심 가족에서의 부부간의 평등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up>(6)</sup>

E. Bott는 가족의 사회적 그물(social network)이 가족내의 과업의 분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도시화와 관련된 이동성이 이러한 가족의 사회적 그물을 해이하게 해 줌으로써 부부간의 평등화 내지 구실의 共有化를 가져 온다고 한다. 도시화와 이동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그물이 해이하게 되면, 종래의 전통적인 친족집단에서처럼 부부가 수행해야 할

(5) Harriet Holter, "Sex Roles and Social change," in Safilios-Rothschild, *op. cit.*, pp. 331-43.

(6) W.J. Goode,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 (New York: Free Press, 1963).

가족의 구실을 代理人에게 맡겨 수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부부는 전통적인 관계와 구실수행을 버리고 이들을 서로 나누어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sup>(7)</sup>

한편, 전쟁, 천재지변과 같은 위기 또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가 일종의 위기상태에 놓이게 될 때, 물질적 자원 뿐 아니라 인간자원의 사회적 동원의 필요가 생기면 남녀의 구실분리에 관련된 문화적 규범과 理想이 해이해지고 구실의 性別 차이가 줄어들거나 철폐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여성의 평등에 대한 위기이론>이라고도 하며, 이는 성별구실의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해 준다는 뜻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이다.<sup>(8)</sup>

또 성별구실의 차별이 남녀의 육체적 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에서, 남녀의 육체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종류의 기술변동이 일어나면, 결국 성별 차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도 있다.<sup>(9)</sup>

이러한 유물론적, 혹은 기술결정론적 변동이론의 대표적인 보기는 역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Marx 자신은 性差別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은 했어도 이 주제를 충분히 다룬 저작은 남겨 놓은 것이 없고, Engels나 Lenin 등이 이를 전개하였다. 물론, 그 요체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것이고, 有史以前時代의 잉여의 개발로 私有財產制度가 생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家父長制가 성립하였다는 식의 설명이 그것이다. 사유재산제도는 集合的 가구보다는 개별적 가구를, 그리고 財產相續制를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되고, 이것이 父家長이 지배하고 女子와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종속되는 가부장적 가족의 근거가 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Engels는 여성의 경제적 의존이 남성에게 예속되는 주요인으로 보고 여성의 취업 등 경제적 독립이 여성해방의 첨경임을 암시하였다.<sup>(10)</sup>

따라서 Engels나 Lenin이나, 근대적인 집합적 형식의 생산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개별적 가구의 소멸이야말로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Lenin은 소련에서 託兒 또는 육아기관과

(7) E. Bott, *Family and Social Network*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57).

(8) E. Boulding, "The Road to Parliament for Women," Paper presented to the Rom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Life, 1966.

(9) Holter, *op. cit.* p. 332.

(10) F.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ing Co., 1942); Holter, *op. cit.*

같이 부분적으로 나마 集合的인 家口기능의 성립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소련은 여성해방의 길에 나아간 것으로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東歐圈을 비롯한 공산주의 사회들에서도 중요한 전통적 性差別의 요소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현대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에서조차 여성의 지위에 관한 한,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구별을 짓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性에 따른 分化 또는 성차별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生產關係에 공통된 분화·차별이며, 계급분화나 차별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성차별이 곧 계급적 차별이라는 인식에는 논리적인 모순과 虚點이 너무 많다.

가령, Goode 자신이 최근에 와서 스스로 제시한 바로서, 그는 자신의 과거의 논지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었음을 시인하면서, 가족이나 친족의 어떤 세력들(요소들)은 기술변동과 경제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sup>(11)</sup> 이것은 주로 가족제도나 여성의 지위·구실에 관련된 제도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기술이나 경제의 변동에 따라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는 가족내외의 여성의 지위·구실의 변화를 두고 내린 결론이지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처럼, 의식적, 계획적으로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구실 자체에 손을 땐 경우에도 같은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추세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이런 현상의 실제적인 모습을 밝혀 보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性不平等의 形式과 形態라는 개념을 다시 이용함으로써 기술과 경제체계의 일정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의 불평등의 해소가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상을 밝혀 봄야 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일반이론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럴만한 단계에까지 이 방면의 연구가 진전되어 있지 못하다.

(11) W. J. Goode, "the Resistance of Family Force to Industrialization," *Proceedings of the VIIth International Symposium*, Sept, 4-8, 1979. Kore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이 작업을 위해 성별구실의 수행이 가장 문제시되면서, 동시에 여성에게 불리하게 비대칭적인 특성을 띠는 제도적 영역을 규정해 보면, 하나는 노동시장 혹은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평등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라는 조직단위에서의 평등문제이다. 위에서 살펴 본 몇 가지 이론적 입장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참여를 가능케 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의 자발적 참여이든, 사회적 동원에 의한 강제적 참여이든, 기술변동과 경제체계의 변화는 곧 직업구조 안에서는 물론 가족 안에서의 남녀 구실과 지위의 평준화를 가져 오는 요인이라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단순화된 논리전개이다.

실지로, 여자가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 나가게 되는 動機에 따라서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계층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계층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자가 직업을 가질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가 종사하는 직종 자체도 매우 限界的인 (marginal) 것 일 뿐 아니라, 가족내에서의 부부간 권위관계에서도 오히려 불평등이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sup>12)</sup>

이것은 한 지엽적인 보기이지만, 이로부터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노동참여 또는 일반적 사회참여 그 자체의 증대로써 곧 여성의 지위가 평등화되고 성별구실의 분화가 감소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직업의 종류, 직위와 직무의 한계, 거기서 얻는 소득의 차이, 관리직이나 책임있게 결정행사를 할 수 있는 권위의 위치에로의 승진의 어려움, 혼인 및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両立不可能性 또는 어려움 등 많은 장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른바 潛在的 성별구실의 분화 (latent sex role differentiation) 와 잠재적 성차별 (latent sex discrimination)의 경우는 허다하게 남아 있으며, 外現的, 外形的 평등화의 주장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성차별이 존속하는 이른바 擬似平等主義 (pseudo—egalitarianism)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sup>13)</sup>

바꾸어 말하면, 그 形式에 있어서 性不平等에 관한 공식적 규범 (法律)과

(12) On-Jook Lee and Kyong-Dong Kim, "A Causal Interpretation of the Effects of Mother's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on Parental Decision-Making Role Patterns in the Korean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8, No. 1 (Spring 1977), pp. 117-131.

(13) Holter, *op. cit.* p. 336.

제도적인 규칙의 철폐 내지 후퇴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절차나 对人間의 행위규범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시민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는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하면서, 극히 사사로운 관계상황에서는 아직도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식의 대접을 하는 〈態度〉와 〈言行〉은 염연히 존재한다.<sup>(14)</sup>

특히, 의식적인 이념적 사회개혁운동을 통하여 수립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념이나 제도와 실제적 관행이나 태도 사이에 심한 격차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性別관념과 性別 구실의 社会化를 포함하는 文化的 요인의 중요성과 정치적 설명, 즉 권력 구조와 관련된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둘이 모두 존속하도록 상호보완적으로 補強해 주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실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다만 북한에 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을 부언해야겠다. 우선 북한사회에 있어서, 이념과 공식적 규범 및 제도의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나 구실이 외현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이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져 보기로 하겠다.

### III. 北韓社會의 男女平等의 理念

북한사회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공산주의 이념의 바탕 위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가령 지난 1972년 12月 27日 최고 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2조에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국가는 產前, 產後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產院,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에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라

(14) Rossi, *op. cit.*

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性別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밝혀진 경우는 헌법 제52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조항이 있고, 남녀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권리조항인 제51조에서도 「公民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旧憲法에서도 이와 꼭 같은 규정이 제11조에 나타나 있고, 제22조에 제 1 항에서 「여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그뿐 아니라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북한 労動黨 강령에도 제 6 항에서 남녀 동일 임금 보장과 제 9 항에서 「여자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16)</sup>

다시 말해서 북한은 〈헌법〉이라는 국가운용의 근간이 되는 이념의 법률적 표현에서 (특히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남녀평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그 영역과 국가의 보장의무와 구체적 보호에 이르기 까지 밝혀져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후 북한의 공산 정권이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1946년 7월 20일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는 이른바 〈民主改革〉의 일환으로 前文과 本文 9조로 구성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 전문에서 「장구한 봉건적 인습과 일본제국주의의 착취에 의해 無權利 상태에서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아 온 조선여성을 정치, 경제, 문화, 가정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하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본문 제 1 조에서도 「국가, 경제, 문화적, 사회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구체적 내용으로는 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 남자와 같은 노동권리, 같은 임금, 사회보장과 교육의 권리, 강제적 결혼금지, 이혼의 자유와 一夫多妻制, 매매결혼, 공사창, 기생제도 등의 금지, 재산상의 동등권과 이혼時의 재산토지분배권 등을 각각 규정하고

(15) 姜求眞 〈北韓法의 研究〉 (서울 : 박영사, 1975), pp. 283-4; 및 高大 아시아문제연구소 〈북한 법률체계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1972).

(16)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1945-80〉 (서울 : 1980), p. 794.

있다.<sup>17)</sup> 이 밖에도 남녀평등권 법령 시행 세칙, 노동법, 혼인법, 형법 등 을 통하여 이런 사항들의 실시와 그에 따르는 制裁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8)</sup>

요약해서 말하면,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에서는 남녀평등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위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축을 이룬다. 이러한 일반적 이념의 수준에서도 몇 가지 특색을 찾아 볼 수 있겠는데, 첫째, 지위와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남녀평등의 이념이 법제화되는 차원까지에 이르지만, 〈사회적 구실〉에 관해서는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위라면 거기에 따르는 구실, 즉 권리와 의무의 실행유형이 따를 터인데 그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치 못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의 소지를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법 등에서 여성의 구실 가운데서도 특히 임신과 출산 및 어머니로서의 구실 등에 관해서는 국가적 〈보호〉의 의무가 명기되어 있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적 가치는 바로 사회주의적인 혁명과 노동 및 사회참여의 이념에서 연유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두번째 특징을 살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남녀평등〉으로 표상되는 〈여성의 해방〉은 곧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어머니로서의 구실이 주요한 실제적 장애물로 나타나고, 가족이라는 제도적 조직단위가 문제시되기에 이르는데, 이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또 법제도적인 수준에서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극복하려는 이념적 정당화와 법제도적인 조처의 보기들 몇가지만 들어 보겠다.

먼저 북한 헌법이나 남녀평등법 이전에 1944년 6월 24일 제정된 旧勞動法에서는 1) 임신중인 여자는 출산 9개월 前부터 시작하여 산전휴가에 이르기 까지 경한 노동에 넘어 갈 수 있으며, 그 동안의 임금은 최초 6개 월간의 평균 보수금에 의하여 지불하고(15조) 2) 1년 이내의 유아를 가진 근로여자는 1일 2회, 30분씩의 젖먹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유모의 수유시간 임금은 평균임금에 준하고(16조), 3) 태모와 유모에게

(17)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29.

(18) 고대 아연, 〈위의 책〉

는 지정한 시간외의 노동이나 야간노동을 금하고(17조), 4) 임신및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의 보조금 지급(18조)등이 보장되도록 규정한 바 있다.<sup>(19)</sup>

그 뒤 1978년 4월 18일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한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더 자세한 규정이 들어있다. 첫째,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16조), 둘째,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고, 지방의 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이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 조직의 임무가 주어진다(31조). 세째, 노동자들은 性別 등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37조). 네째, 국가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고, 젖먹이 어머니 또는 임산부는 야간노동을 금지한다(59조). 다섯째, 여성노동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 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휴가를 받는다(66조).<sup>(20)</sup>

한편, 이를 보강하는 조처로서, 1976년 4월 29일 全 6 장 58조에 이르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주체형의 혁명 아동을 보호교양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새로운 세대의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목적으로 반포되었다. 여기에서도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스리며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역사적 과업수행에 이바지한다」 (6조)는 목적이 밝혀져 있다.<sup>(21)</sup>

이와 같은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된 바를 이념적인 수준에서 보강하는 주창들이 또한 여러 곳에 드러나고 있다. 가령 1968년 여성동맹위원회에서 채택된 〈가정의 혁명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1970년 11월 노동당 5차

(19) 〈위의 책〉

(20) 국동문제연구소 〈위의 책〉 pp. 815-19.

(21) 〈위의 책〉 p. 819.

대회에서 6개년 계획으로 〈3대 기술 혁명〉이 채택되는 데에도 〈전여성 을 가정일에서 해방시키자〉라는 슬로건이 나온 바 있다.<sup>22)</sup>

또한 1972년 발행의 조총련 교과서에서도 「수백, 수천년 동안 아무런 권리도 못가지고 봉건적 억압 아래서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는 모든 사업에 남자들과 같이 참가하여 힘쓰게 되었습니다」라는 글귀가 나오고 있다.<sup>23)</sup>

그 뿐 아니라 남녀평등법 반포 27주년 기념 노동신문 사설에서 「우리 여성들은 나라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으며, 훌륭한 사회정치 활동가로 국가경제 관리 일군으로 자랐으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서 기사, 기수, 전문가로서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꽂피우고 있다」는 칭찬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 일찌기 김일성이 「반일 부녀회를 모으고 근로여성들을 뮤어 세웠으며, 여성들을 항일투쟁을 비롯한 반일 민족해방 투쟁에도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모든 여성들이 민족해방 투쟁에 떨쳐 일어나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는 가장 정확한 투쟁방침을 명시하였다」라는 역사적 배경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업적에 관하여서도, 「…체질과 기능에 따라 힘껏 일하고 있으며 온 나라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산전산후 휴가제와 셋 이상의 어린이들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6시간 노동제 등이 실시되어 모두가 마음놓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식료품을 공업적 방법으로 가공하여 냉동기와 세탁기, 전기 밥가마를 더 많이 공급하여 가정일을 헐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수천년 동안 우리 여성들이 얹매여 있던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문명하고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는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여성들을 온갖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켰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분석하여 혁명과 건설의 每時期에 그들

(22) 〈노동신문〉 1970. 11. 4.

(23) 조총련 국민학교 6학년 교과서 〈조선역사〉 1972년 발행.

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24)</sup>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여성의 법적 평등이 보장되고 그들이 가정일에서 해방되어 사회참여를 충분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창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에 있어서 여성은 그처럼 완벽한 〈해방〉을 이룩하였으며, 그 해방이 뜻하는 바가 과연 性別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를 뜻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참여와 가족생활 간의 긴장 모순은 극복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IV. 男女平等의 實際와 북한사회의 特성

위낙 제한된 자료로 자세한 분석은 어렵겠으나 위에서 검토한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이념적 주장에 비해 실제는 어떤가를 알아보는 것이 곧, 북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한가지 길이 될 수 있으며, 또 이 측면에서 이념과 실제의 격차나 괴리를 알아 내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사회의 남녀평등의 실체를 몇가지 주요부문에서 검토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에 비추어 이념과 실제, 공식적, 외현적인 것과 비공식적, 잠재적인 것 사이의 괴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다음, 북한 사회의 변천과 관련 남녀평등의 사회적 의의와 북한사회의 특성간의 관련성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한다.

##### 1. 공식적 · 외현적 평등화

무엇보다도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공식적인 수준에서 평준화되는 모습은 경제 및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경제부문에서의 여성의 사회 참여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대체로 근로 참여에 있어서 53년 이래 76년에 이르는 사이 전체 종업원의 26.3%에서 48% (1971년의 53.7%가 두드러진 예외)에 달하고 있어,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가 전체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구

(24) 〈노동신문〉 1973. 7. 30.

체적인 수준에서 여성들이 과연 어떤 경제활동부문에서 어떤 지위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히 알 길이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낡은 자료이나, 지역적인 관찰에 따르면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된 후에도 중요도시에서는 기생과 창녀들이 자기집에서 은밀히 영업을 했고, 여성들은 농장, 광산, 공장, 벌목장, 어로작업, 차량운전에서 남자들과 같이 중노동, 시간외 노동 또는 지하노동에 참여하였다고 한다.<sup>(25)</sup> 그리고 1970년 11월의 당 5차 대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여성들

표 1. 여성의 노동력 참여 추이

시기	전 종업원수 (단위 1,000人)	여성구성비 (%)
1953	628	26.3
1956	850	20.0
1957	—	20.0
1958	—	29.0
1959	1,459	35.0
1960	1,506	32.7
1961	1,609	33.3
1962	1,865	34.9
1963	1,924	36.2
1964	2,092	38.5
1971	—	53.7 <sup>a)</sup>
1974	—	45.5 <sup>b)</sup>
1976	—	48.0 <sup>b)</sup>

출처 : 조선중앙연감, 1965년말 현재; 노동연감 1964

a)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1977, P 415

b)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1980, P 516

이 공업 노동자中 45.5%, 농업에서 60%의 비율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공업에서 70%, 임업에 30%, 광산과 탄광의 지하노동의 경우 20%, 중

(25)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pp. 29-30.

공업에 15% 비율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 이전의 1959년 자료에서는 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人民學校에서 80%, 중학교에서 50%, 기술학교에서 30%, 고등학교에서 20%, 대학에서 15%로 나타난 바 있으며, 1976년 현재로 기사, 전문가, 의사, 예술인 중 여자가 1만여명이라는 숫자만 있을 뿐 그 비율은 알 길이 없다. 다만, 한가지 간접 자료에 의하면 1963년의 기술자, 전문가 등의 수가 총 29만 4천 정도인데 비해 여성이 약 4만 3천명으로 14% 가량이라고 한다.<sup>(26)</sup>

간접적인 자료이긴 하나 최근에 나온 북한의 小說작품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기관장이라든가 기타 책임있는 자리보다는 전통적인 위치에 종사하는 것이라는 증좌가 눈에 뜨인다.<sup>(27)</sup> 정치 참여 역시 표 2에서 보면 그 참

표 2. 여성의 정치참여

1. 최고 인민위원회 대의원			
기별	시기	대의원수	여성의 구성비 (%)
1 기	1948. 8. 25	572	12.0
2 기	57. 8. 27	215	12.5
3 기	62. 10. 8	383	9.0
4 기	67. 11. 26	457	15.9
5 기	72. 12. 12	541	20.9
6 기	77. 11. 11	579	20.8

2. 지방 대의원

	1963. 3	64,650	25.7
	65. 9	87,070	25.3
	69. 9	106,519	32.5
	75	27,068	25.6
	78. 3	27,512	25.7

출처 : 북한연구소 자료

(26) 〈위의 책〉 p. 416.

(27) 金炳燦「北韓 문학작품에 나타난 갈등유형과 내부의 모순」

〈統一政第〉 제 6 권, 제 2 호(1980), pp. 200-23.

가율이 인구의 性比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증가추세도 아주 완만하여 일종의 〈눈가림〉(tokenism)으로 끝나는 인상을 짙게 받는다.

결국, 공식적·외형적인 평등화에 있어서도 여성의 지위가 이념에서나 법제상으로 주창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고, 비록 노동참가율이 높다고는 하나 그것이 실제로 뜻한 바가 무엇인가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 불평등은 그대로 잔존하는 상태에서 여자들이 심한 노동생활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조직생활과 그것을 통한 노동력 동원 및 정치교육의 측면에서 접근치 않을 수 없겠다.

## 2. 조직생활과 여성동원의 실상

북한의 여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종의 조직체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을 한 가지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첫째, 만 14세에서 30세 까지의 남녀는 무조건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社勞青이라 약칭)에 가입하여야 한다. 북한 노동당의 지도 밑에 운영되는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 단체로 규정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千里馬운동의 大高潮를 계속 견지하며,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추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체이다.<sup>(28)</sup> 따라서 그 기능은 필요에 따라 정치적 활동 이외에 노동동원도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

둘째로, 여성조직의 핵심체는 역시 〈조선민주여성동맹〉(女盟)이다. 이는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으로 시작되어, 1959년 1월 19일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통합 개칭하였다. 만 18세에서 55세까지의 여성이 무조건 가입하는 여맹은 1976년 현재 270만명에 달하는 성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이 여맹의 목적은 여성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여성의 역할을

(28)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p. 805, 「북한 社勞青規約」前文.

(29) 극동문제연구소 반공교육 지도 자료.

더욱 제고시키는 데 있으며, 여성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다그치는 데 여맹은 중요한 임무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당면과업으로는 1)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 2) 여성의 사상적 혁명화, 3)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공산주의 교양실시, 4) 천리마 작업반운동 적극 추진, 5) 어린이의 공산주의 교양강화, 6) 임전태세 유지, 7) 인민군 원호사업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아물든, 여맹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한 노동력 충당을 위한 여성노동력 동원의 메커니즘이다.<sup>30)</sup>

세째,〈어머니학교〉가 1961년에 설립되었다. 70년대 말에는 약 9만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위생문제 등을 주로 다룬던 것이 여성에 의한 자녀와 남편의 교화책으로 여성의 사상개조와 가정의 사상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sup>31)</sup>

네째, 이 밖에도 직장여성들은 〈조선직업총동맹〉(職盟)에 가입해야 하며, 농촌여성은 〈농업근로자동맹〉(農勤盟)에, 만 18세~35세의 여성으로 자녀가 없으면 〈여성노동적위대〉에 가입해야 한다. 군에 자원입대(?)한 약 2만여의 여성현역군인 이외에도 1971년 현재 여성노동적위대원 수는 약 1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sup>32)</sup>

다섯째, 이상의 공식적인 조직체 이외에도 동원체제가 다양한데 그중에도 평양을 비롯한 도청소재지 및 구역에 조직된 동인민위원회 산하 〈人民班〉이 있다. 인민반장은 주로 직장에 나가지 않는 여자로 선출된다. 대개 이들은 활동력있는 여자당원이며 부반장은 인민반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된다. 인민반은 도시행정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체로서 주민이동, 전출, 위생, 문화, 노력동원, 사상교양, 환경정리, 공공주택의 관리등을 집행하고 통제한다. 덧붙여, 1958년부터 실시된 〈5戸 담당제〉는 1960년 이래 이른바 전 국토의 요새화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붉은 가정 창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열성당원 1명을 배치, 부부간의 애정문제를 포함한 가정 생활 일체를 지도하는 통제기구가 되어 있다.<sup>33)</sup>

(30) 국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p. 483.

(31)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p. 429.

(32) 공산권문제연구소 자료.

(33) 국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p. 480; 및 都興烈「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北韓〉 1973, 11월호 pp. 208-18.

이러한 여성의 동원은 정치교육의 목적으로 있지만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동과 군사적 동원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부터 실시된〈3대 기술혁명〉중의 하나인〈가정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 시설 등의 확충과 부엌살림의 간편화(밥공장, 찬공장, 국공장, 공동세탁소 등) 제도를 마련하였다. 임금정책도 한 가족에서 두 사람 이상이 노동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수준을 채택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여자의 혼인연령을 종래의 17세에서 27세로 늦춘 것도 여성의 노동력 동원이 큰 이유가 된다. 김일성 자신이 「여자들이 한창 배우고 일할 나이에 시집을 가면 학습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정치생활에도 적극 참가하지 못한다」고 선언할 정도이다.<sup>34)</sup>

### 3. 가족생활과 남녀평등

끝으로 북한여성의 지위와 구실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족생활에 관한 언급을 피할 수 없겠으나, 이 문제 역시 위낙 체계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피상적인 고찰밖에 하지 못하겠다. 단지, 이 문제 역시 위에서 검토한 여성의 조직생활과 노동동원이라는 측면의 생활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대체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내거는〈여성해방〉의 첫째 조건은 모든 여성을 公的 產業에 종사시키는 일로 구현된다고 보고, 나아가서는 Lenin이 말한 것처럼「부녀를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정치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의 운동, 우리의 투쟁,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적인 사회에로의 전환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의 수백만의 노동여성을 우리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련 정부가 시작한 사업은 수백이 아닌 수백만의 러시아의 부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전제를 요구한다.<sup>35)</sup>

가족의 기능과 그 속에서의 남녀(부부) 관계의 특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겠는데, 매우 부분적인 관찰에 따른 북한사회의 가족과 남

(34)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35)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30, p. 382, David and Vera Mace, *the Soviet Family*, 1963, p. 89에서 再引用.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p. 378 참조.

녀평등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6)</sup>

첫째로, 북한사회주의 헌법 제63조에서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라고 규정하면서 김일성의 혁명 이념은 사회전체가 하나의 〈붉은 가정〉으로 집단주의화한 공산주의 사회의 전설로 집약된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인 〈家族主義〉(familism)를 전체 사회의 테두리로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集合主義化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데 불과하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열등성이란 관념은 자본주의로 오도된 가치관과 가정에 기인한 것이고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전통적 구실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결국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각종 노동동원과 정치동원에 이용한다.

둘째로, 그 결과 단위 가족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고(터밭과 같은 예외가 있을 뿐), 종교의 기능도 없어졌으며, 사회화 기능조차 국가나 당이 거의 떠맡게 되어 하나의 정치사회화를 보조하는 단위로 전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거 자녀를 통한 부모의 逆社會化운동이 실패하자 여성은 각종 조직생활을 통해 교화시킨 다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내에서 자식과 남편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담당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밖에 남은 기능으로서 性的인 만족의 규제와 출산 기능 그리고 최소한의 정서적 안정과 노약자 보호 정도에 그친다.

세째, 궁극에 가서는 김일성을 〈어버이〉로 우상화시킴으로써 가족내의 가부장의 권위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부모나 가족 성원보다도 〈어버이 김일성〉을 더욱 숭상해야 한다는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집합주의적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가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지위는 외형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의 여성의 지위나 구실은 아직도 잠재적인 열등자로서 사회화 기능, 성적 만족의 대상, 가정부, 〈부모를 모시는〉 며느리 등으로 남아있다. 소설이나 기타 문예작품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구하기 힘든 맥주를 사서 출상을 보아주며

(36) 이 부분에 관한 자료는 북한연구소 〈위의 책〉; 도홍렬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및 기타 직접자료에 의존한 것이다. 그리고 이문웅「북한의 가족생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론〉(서울: 민음사, 1980) 참조.

애교로 설득한다든가 공중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남편의 뒤를 따라 걷는다든가, 여성이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데도 〈집의 아주머니〉라는 식의 호칭을 하는 등의 보기가 눈에 뜨인다. 여성 자신들도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자기 이상대로 가정을 꾸려 갈 수 있는 기회와 여전의 제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여성이 남성화하는 것을 불평하는 등 전통적 남녀불평등의 의식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혼인상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제약이 정치적인 이유로 남녀 불평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촌에 사는 여자와 결혼한 도시 남자는 여자를 따라 농촌에 가서 거주하여야 하므로 농촌여성의 배우자선택 기회에 제약이 되고 있다. 북한형법의 경우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가 있으나 실지로는 성범죄 뿐 아니라 여성에게 불리한 각종 범죄사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혼에 있어서도 党成分에 따라서 일방적인 이혼이 강요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에도 여성의 희생되는 예가 더 잦다.

요컨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정〉도 실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동원의 한 단위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만 충족시킬 수 있는 한 남녀평등의 이념은 왜곡될 수 있고 과거의 남녀차별 관습이나 태도는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 잔존해도 무방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 V. 맷 는 말

북한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길로서 남녀평등의 이념과 실제를 검토하는 일이 이 글의 주목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性의 사회학〉의 접근을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고, 性의 사회학이 제공하는 주요한 이론적 시사로서 남녀차별은 그 형식과 형태를 나누어서 외형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을 자세히 따져 볼 것을 권장하였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제대로 되었는지는 자신이 없지만 일종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얻을 수 있는 북한사회의 특징을 간추려 본다면 과연 어떤 요약이 가능할까? 이 결론 부분에서는 이 점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북한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이념은 초기 공산주의 〈혁명〉 〈즉 정권장악〉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작업의 하나로 토지개혁, 중요산업체 국유화, 노동법령 반포와 더불어 제정된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에서 표면적으로 정립되었고 헌법에서도 명백히 그리고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기타 법률적, 제도적 마련들도 계속 추진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남녀평등의 이념은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변천 과정과 관련하여 시기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위한 정치사회화를 조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한 쪽에서는 그러한 국가의 의식적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외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 태도, 행동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차별은 계속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동원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사회의 변천과정과 여성에 대한 조처를 비교하는 표 3을 참조하면, 한마디로 각 시기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성을 조직화, 동원하는 일이 강화된 보기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여성의 노동동원과 정치사회화의 조직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 남녀평등화, 정치적 사회의식 고취 등의 적극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여성의 남성화, 여성 미 상실(의복에 대한 무관심), 현모양처의 구실 수행 불가능, 가족 생활에 대한 무관심 등의 전통적 여성의 관념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불만들이 드러나고 있다.<sup>37)</sup>

가족생활면에서도 노력동원과 정치학습의 결과로 女必從夫思想의 감소, 경제적 수입증대, 党優先사상 고취, 편리한 생활 등이 약간 지적되는 반면에 가정불화, 여성의 가정생활 시간감소, 획일적 가정생활, 친목한 가정 분위기 파괴 또는 부부 친밀도 감소, 가족의 대화시간 박탈, 여가부족, 가정생활의 무미건조, 가족내 정치적 긴장조성, 가족내 인간미 결여, 주부의 위치 약화 등의 부정적 결과가 뚜렷이 지적되고 있다.<sup>38)</sup>

(37) 국토통일원 〈북한이질화 실태조사〉 (1978), pp 475-502 참조.

(38) 〈위의 책〉 참조.

다음 밥공장이나 탁아소 같은 제도적 마련이 여성과 가족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본다면 역시 밥공장의 경우 여성의 직장진출, 부엌에서의 해방등 편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앞에서 지적되었던 것과 같은 여성의 남성화, 여성 본능의 수탈과 의욕상실, 고된 노동시간과 동원시간의 연장, 부부간의 정의 상실, 가족에 대한 무관심, 가정불화, 가족적 분위기 파괴, 전통유습 파괴, 심지어 영양부족 같은 부정적 효과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탁아소나 유치원의 경우에도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것조차 노동동원의 강요나 노예화로 보고 母性상실, 부모자녀간의 거리감, 불신조성, 효성상실, 모자간의 정의 파괴, 자식에 대한 애착심의 가중유발, 전통적 가족제도의 파괴, 자녀교육의 불충실파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만 두드러진다.<sup>(39)</sup>

그러면 남녀평등제도 자체가 여성과 가정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 결과가 더욱 강조된다. 우선 여성의 지위향상, 평등화, 권리주장, 독립심 조장과 남편에 대한 의존도 감소, 노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 편한 생활 등이 긍정적인 것으로 지적되는 반면에 부정적 효과로는 단란한 가정파괴, 가정불화, 부부갈등, 가족제도 와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여성의 남성화, 현모양처 구실의 약화에서 비롯하여, 남성의 상대적 지위저하로 가족내 위계질서의 파괴, 남성경시, 夫權말살, 남편존경심 감소 등의 가족내 권위관계의 변화가 지적되고 또 여유시간 박탈과 노동력동원과 착취, 부담 가중 등이 손꼽히고 있다.<sup>(40)</sup>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기초로 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함의는 첫째, 북한의 남녀평등은 그 이념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엿보인다는 것, 둘째, 그 괴리는 정치집단의 특수한 목표와 관련하여 조장될 수 있다는 것, 세째, 그 결과는 실지로 여성과 가족생활에 갖가지 부정적인 것으로 부각된다는 것 등이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두고 불만을 표시하는 그 태도 속에는 여전히 여성의 관념, 사회적 지위와 구실 등에 대한 과거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녀평등의 궁극적 이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문

(39) 〈위의 책〉 참조

(40) 〈위의 책〉 참조.

표 3. 북한사회의 전개과정과 여성관계 주요사건

연도	시기	주요변화	여성관계사건
1945-46	整備期	토지개혁, 주요산업국 유화, 시설의 복구	여맹조직(45), 남녀평 등법공포(46), 노동법령 공포(46)
1947-50	과도기	2次의 1개년계획, 1차 2개년계획, 경공업, 농업주력, 남침준비	
1951-53	남침기		
1954-60	전후복구기	「사회주의공업국가」 기초화립, 농업집단화, 개인상공업의 협동화, 집단지도사업, 인테리 개조, 중공업 기지복구	5호담당제(58) 여맹통합개칭(59)
1961-69	사회주의공업화 시기	· 7개년계획(3년연장), 중공업 우선 발전, 경 공업과 농업 동시 개 발, 경제건설과 국방건 설병행, 주민성분변경, 주민등록사업, 51개계 총구분 사업	어머니학교설립(61) 가정의 혁명화(68)
1970-	사회주의체제 고착기	6개년계획(71-), 신경 제개발 7개년계획(78-) 3大기술혁명, 3대혁명 소조운동, 공업근대화,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전여성 가정으로부 터의 해방(70), 사회주 의헌법(72), 남녀 평등 법 반포27주년기념(73), 농촌여성문제(74), 어 린이 보육교양 법(76), 노동법개정(78)

출처 :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1980)에 기초하여 필자작성

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일종의 人間主義的(humanistic)인 것으로서, 인간이 (남자건 여자건) 타고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自我實現을 至高의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 내세우는 해방이란 고루한 봉건제도와 관습으로부터 제도적으로 해방된다는, 일종의 시대에 뒤진 해방관의 수준에 머물고, 참된 인간적 차원에서의 해방과는 동떨어진 것이 될 수가 있다. 가령, 여성의 노동 참여를 통한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밥공장, 찬공장등의 설비를 통한 부엌으로부터의 해방, 탁아소 시설을 통한 자식으로부터의 해방같은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변혁은 실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사실상 강제적인 여성의 노력동원을 통하여 이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경직된 정치적 조직화라는 새로운 형태로 인간적 속박을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 가족내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가족은 가족대로 파괴되도록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자아완성을 얼마만큼 이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고찰하더라도 남녀평등은 실제에 있어서 일상적인 대인관계의 형식에서는, 잠재적인 형태로 상당한 정도 제약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이론적인 해답을 몇가지만 시사한다면, 첫째로, 정치적, 경제적 기타 제도의 차원에서는 남녀평등화의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전통적 바탕에 뿌리를 둔 문화적인 요소가 계속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논지가 가능하다.<sup>(41)</sup> 둘째로는, 경제, 기술적 변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라던가 남녀관계의 어떤 측면들은 변화의 저항하는 세력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sup>(42)</sup> 세째로, 남녀평등의 이념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강조될 경우에는, 역시 같은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남녀평등은 무시될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위에서 시사된 설명중에서 첫째와 두번째의 경우는 남녀불평등에 관련된 사회변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비하여, 세번째 설명은 특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더욱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 Alva Myrdal, "Afterword: New Research Directions," in L.B. Iglitzin and Ruth Ross, eds., *Women in the World: A Comparative Study* (Santa Barbara, CA: Clio Press, 1976), pp. 405-411.

(42) Goode, *op. cit.* (the Resistances of Family, 1979).

결국, 어떤 사회에서도 남녀불평등의 해소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나 경제기술적 필요에 따라서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